

「구미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4년 8월 27일

나. 발 의 자: 허민근 · 김근한 · 김영길 · 김정도 · 이명희 · 장미경
의원(6인)

다. 회부일자: 2024년 8월 28일

라. 상정일자: 2024년 9월 5일

제2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허 민 근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청년의 역량과 삶의 질 향상 등을 구현할 수 있는 청년친화 도시 조성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청년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기 위함이며, 「청년기본법」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청년 친화적인 정책 기반을 구축하여 청년들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목적, 용어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3조)
-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기본계획·시행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6조)
- 조사와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8조)
-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청년기본법」 제24조의6
 - 「청년기본법 시행령」 제21조의8
 - 「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」 제2조, 제5조, 제6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영 훈

○ 본 조례안은

- 2023. 3. 21. 「청년기본법」 제24조의 6 ‘청년친화도시’ 조항 신설과 2023. 9. 12. 「청년기본법시행령」 제21조의 8 ‘청년친화도시의 지정’ 조항 신설에 근거하여 우리시의 청년정책과 청년발전을 위한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「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」와 더불어 청년친화적인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함께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취지에 이견이 없으며 상위법과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- 다만, 청년친화도시 조성은 지역의 중요한 인적자원인 청년들이 구미시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나, 이것이 선언적 의미가 아닌 지역의 청년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목표와 계획을 명확히 하는 등 더욱 고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- 특히, 집행기관에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·시행 시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회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시에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와 주거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 론 요 지

- 수정안 제4조제2호 :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원칙을 더욱 구체화하여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시장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.
- 수정안 제7조 및 제8조 : 청년친화도시 조성 자문을 위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 설치 근거 조항을 추가하여 구미시 맞춤형 청년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며, 기존의 「구미시 청년정책 위원회」에서 해당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.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생 략

7. 심 사 결 과: 수정가결